KOSHA GUIDE

C - 79 - 2015

- (가)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작업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압력계를 설치, 유지, 점검하여야 한다.
- (나)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

6.6 안전보건시설의 설치

- (1) 낙하물방지망,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은 자중, 풍압, 방지하고자 하는 낙하물 또는 사람의 낙하로 인한 충격하중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점 강도를 발현하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발판의 끝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수직방망을 설치하는 등 바람에 날리어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3) 낙하물방지망은 고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바람의 영향 등이 크게 발생되므로 낙하물의 제거 및 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능하면 수직보호망을 설치 하는 것으로 하며, KOSHA GUIDE C-26-2011(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) 5항 (1)호에 따라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첫 단만을 설치하고 그 이외의 낙하물방지망은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.
- (4) 간이화장실은 근로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매 3층 이내마다 설치하고 이의설치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하여 두어야 한다.
- (5)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유도시설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, 위급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6.7 화재 및 방재

(1)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